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 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10. 4.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9월 28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9월 28일
- 다. 상정일자 : 제90회 임시회 제3차위원회 (2002. 10. 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 관 재

가. 제안이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강습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 등 불합리한 사항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2급이상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인 강습료와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함.(안 제13조의2)

구 분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비 고
센터의 귀책사유	- 납부한 강습료 및 이용료 전액 반환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배상	- 일할계산하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잔액 반환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배상	모집결과 강좌개설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는 10퍼센트 배상대상에서 제외함
회원의 귀책사유	- 납부한 강습료 및 이용료의 10 퍼센트 공제후 반환	- 일할계산하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총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 일정 종목(강좌)이상 수강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3)

- (1) 동시에 3종목(강좌)이상 신청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 (2)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 (1) 회원 및 대공연장 관람자 : 3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 (2) 회원권 2개이상 : 5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 (3)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 (4)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 (5)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 (6) 기타 차량 : 기본 1시간 2,000원,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월 강습료 기준을 주 1회 내지 주 5회로 변경하면서, 문화강좌의 강습료를 성인이나 유아 구분없이 월 10,000원내지 25,000원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 문화강좌·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금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유아·초동생교육 프로그램	25,000~ 100,000	25,000~ 150,000	별도로 징수하던 교육비 등을 포함함
성인 수영 강습(5회/주)	신 설	70,000	
초동생 수영 강습(5회/주)	신 설	40,000	
초동생 수영(5회/주-심도과정)	50,000	폐 지	
초동생 수영(5회/주-개인지도반)	신 설	100,000~ 150,000	
초동생/유아 골프 (7회/주-강습료 포함)	신 설	80,000~ 100,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마포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제130조 및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8. 5. 1일 조례 제14호로 제정되고 2002. 1. 15 조례 제503호로 전문 개정된 동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된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와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사용료의 징수 등을 규정한 현행조례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3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과 2급 이상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고 현행규정에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만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위약손해금을 과다하게 부담함으로써 소비자보호법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부합되지않아 안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센터자체의 귀책사유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상응한 위약손해금 배상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3에서는 동시에 3종목이상 신청자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장기등록자에게는 사용료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서 제1호 시설사용료 중 주차료는 무료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차요금체계를 실정에 맞게 세분화하였으며 제2호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중 문화강좌의 기본수강료는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였고 유아·초등생교육수강료의 상한선은 월 10만원에서 교재비를 포함하여 월 1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헬스 및 실내골프는 주6회에서 주7회로 휴일까지 이용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실내골프는 자유이용시간제에서 골프공 사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하는 코인제로 변경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동 센터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이용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동 센터의 사업과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회원확보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이용 신청자가 많은데 3개월 이상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일부 종목에 해당되나 비수기 등을 안배한 것임.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서예는 일주일간 몇 시간 하나?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주 3회 1시간씩임.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회비수납 형태는?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월납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실내골프 코인제의 사용공 수는?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약 100개 정도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지하 주차장 주차 대수는?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150대임.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주차관리초소 및 주차장 출입구를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할 것임.

○ 질의요지(고일재 위원) : 행사장이용시 주차장을 무료사용토록 하는 것은 적자운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인가?

○ 답변요지(이평신 본부장) : 주차장관리는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출입의 통제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마포 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2. 9.

제출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 안 이 유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일부 현실에 맞지않고 불합리한 사용료의 종류 및 징수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강습료 및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탄난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 등 불합리한 사항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2급이상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3항)

나.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인 강습료와 이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보호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정비함.(안 제13조의2)

구 분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비 고
센터의 귀책사유	- 납부한 강습료 및 이용료 전액 반환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배상	- 일할계산하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잔액 반환 - 납부한 금액의 10퍼센트 배상	모집결과 강좌개설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는 10퍼센트 배상대 상에서 제외함
회원의 귀책사유	- 납부한 강습료 및 이용료의 10 퍼센트 공제후 반환	- 일할계산하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총금액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다. 일정 종목(강좌)이상 수강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의3)

- (1) 동시에 3종목(강좌)이상 신청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 (2)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라.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주차장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 (1) 회원 및 대공연장 관람자 : 3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 (2) 회원권 2개이상 : 5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 (3)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 (4)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 (5)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 (6) 기타 차량 : 기본 1시간 2,000원,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마.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의 월 강습료 기준을 주 1회 내지 주 5회로 변경하면서, 문화강좌의 강습료를 성인이나 유아 구분없이 월 10,000원 내지 25,000원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바.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징수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변경하거나 신설함.(안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유아·초등생교육 프로그램	25,000~ 100,000	25,000~ 150,000	별도로 징수하던 교육비 등을 포함함
성인 수영 강습(5회/주)	신 설	70,000	
초등생 수영 강습(5회/주)	신 설	40,000	
초등생 수영(5회/주-심도과정)	50,000	폐 지	
초등생 수영(5회/주-개인지도반)	신 설	100,000~ 150,000	
초등생/유아 골프 (7회/주-강습료 포함)	신 설	80,000~ 100,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3. 참고 사항

가. 근거 법규

(1) 지방자치법(2002.3.25 법률 제6669호) 제127조 및 제130조

(2) 장애인복지법(2001.4.7 법률 제6460호) 제27조

(3) 장애인복지법시행령(2001.1.29 대통령령 제17115호) 제13조

(4) 소비자보호법(2001.3.28 법률 제6431호) 제12조

(5) 소비자보호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66호) 제11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2001.12.4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2호)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제20호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의 : 물가관련 협의결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생략 협의함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2002.9.5~9.15)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1부

(4) 2002. 9. 2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문화체육센터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

제12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2급이상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2급이상 장애인의 보호자 1인은 장애인 동행 입장에 한하여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13조제2항중 “납부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강습료등의 납부 및 반환) ①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강습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강습료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신청시

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등 전액 반환 및 동금원에 대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단, 모집결과 강좌 개설의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배상 대상에서 제외)

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강습료등 및 납부한 강습료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2. 회원의 귀책사유로 반환 신청시

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강습료등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

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강습료등의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③강습료등의 반환은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등록회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개시일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개시일 이후 등록한 회원의 강습료등 반환의 경우에는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개시일부터 이용한 것으로 보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출자의 강습료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의3(할인)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종목(강좌)이상 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 1. 동시에 3종목(강좌)이상 신청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 2.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종목이상 신청과 3개월이상 장기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강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 시설사용료 나목 개별기준 (7) 주차료 및 동표 제2호·제3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 및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7) 주차료

구 분	주 차 료	비 고
모든 회원(일일회원 포함) 및 대공연장 관람자	· 3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회원권 2개이상 사용자	· 5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시설사용 행사차량	· 5대까지 무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무료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경과시마다 500원추가 징수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 1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기타 차량	· 기본 1시간 2,000원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10,000~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 기	25,000~40,000	23,000~35,000	20,000~30,000	
	1회 기본료	1,800~2,300	1,200~2,000	1,000~1,500	
전 산 교 육 프로그램		35,000~40,000	35,000	30,000	
유아·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30,000	25,000~15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 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나. 체육시설 사용료

(1) 수 영

(단위 : 원/월)

구 분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 아			
	강습료		이용료	기본료	강습료	기본료	강습료		개 인 지도반	기본료	엄마 포함	유아 단독
	3회/주	5회/주	5회/주	1회	3회/주	1회	3회/주	5회/주	5회/주	1회	3회/주	3회/주
사 용 료	50,000	70,000	50,000	2,500	30,000	1,700	25,000	40,000	100,000~150,000	1,300	40,000	30,000
기 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비수기(당해년도 10월~다음년도 6월) 기간중 자유수영 월 2회 무료사용(단, 평일에 한함)											

(2)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7회/주	1회 (기본료)	7회/주	1회 (기본료)	
사용료	40,000	3,000	35,000	2,500	휴관일을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3)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전일(주 7회)			자유이용 (코인제)			비고
	성인	중·고생	초등생/유아 (강습료포함)	1 BOX	2 BOX	3 BOX	
사용료	80,000	75,000	80,000~ 100,000	4,000	6,000	8,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휴일은 별 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타	· 초등생/유아 기본료는 1일 1~2시간 기준임						

비고 : 제2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독서실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일일 사용료	1,000원	5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7.(생략) <u>(신설)</u></p>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생략) <u>(신설)</u></p> <p>③(생략)</p> <p>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생략) ②<u>납부한</u>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생략) <u>(신설)</u></p>	<p>제2조(용어의 정의) ----- 1.~7.(현행과 같음) 8. <u>"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에서 정하는 이용기간의 초일을 말한다.</u></p> <p>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u>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2급이상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는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2급이상 장애인의 보호자 1인은 장애인 동행 입장에 한하여 센터의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한다.</u> ④(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현행과 같음) ②<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u> ----- ----- 1.~2.(현행과 같음)</p> <p>제13조의2(감습료등의 납부 및 반환) ①<u>센터에서 설치·운영하는 각종 강좌 등의 수강, 센터의 각종 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감습료 및 이용료(이하 "감습료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감습료등은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p> <p>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신청시</p> <p>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감습료등 전액 반환 및 동금원에 대한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단, 모집 결과 강좌 개설의 최소인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퍼센트 배상 대상에서 제외)</p> <p>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부터 중단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잔액 감습료등 및 납부한 감습료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p> <p>2. 회원의 귀책사유로 반환 신청시</p> <p>가. 개시일 이전 - 납부한 감습료등의 10퍼센트 공제후 반환</p> <p>나. 개시일 이후 - 개시일부터 반환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감습료등의 10퍼센트 공제후 잔액 반환</p> <p>③감습료등의 반환은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휴관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등록회원의 경우에는 매월 도래하는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④개시일 이후 등록된 회원의 감습료등 반환의 경우에는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개시일부터 이용한 것으로 보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p> <p>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출자의 감습료등 반환은 퇴출 결정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p> <p>제13조의3(할인) ①구청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종목(강좌)이상 신청자 및 장기등록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시에 3종목(강좌)이상 신청자 : 총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2. 연속하여 3개월이상 장기등록자 : 사용료의 10퍼센트 할인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종목이상 신청과 3개월이상 장기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한다.</p>

현행	개정안					
<p>(별 표)</p> <p><u>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감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u></p> <p>1. 시설사용료</p> <p>가. 일반기준 (1)~(6)(생략)</p> <p>나. 개별기준 (1)~(6)(생략) (7) 주차료</p>	<p>(별 표)</p> <p><u>마포문화체육센터 사용료(대관료, 감습료, 이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u></p> <p>1. 시설사용료</p> <p>가. 일반기준 (1)~(6)(현행과 같음)</p> <p>나. 개별기준 (1)~(6)(현행과 같음) (7) 주차료</p>					
구분	월 정기권 사용자 / 월 수강자	1회 사용자	비고	구분	주차료	비고
주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 500원 추가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1시간 2,000원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시설사용 행사준비 차량은 2대까지 무료	모든 회원(일일회원 포함) 및 대공연장 관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 징수 	
				회원권 2개이상 사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시설사용 행사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대까지 무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무료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참여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확인 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수강신청, 방문 등 업무용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무료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1시간 초과시 센터장 확인 차량은 면제
				기타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1시간 2,000원 · 10분 경과시마다 500원 추가징수 	

현		행			비고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수 강 료				
	성 인	중·고생	초등생		
문화강좌 프로그램	20,000~ 25,000	20,000	20,000~ 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기	25,000~ 40,000	23,000~ 35,000	20,000~ 30,000	
	1회 기본료	1,800~ 2,300	1,200~ 2,000	1,000~ 1,500	
전산교육 프로그램	35,000~ 40,000	35,000	30,000		
유아·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25,000~100,000		3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단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2회 내지 5회 기준임 · 1회 기본료는 1일 2시간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나. 체육시설 사용료

(1) 수 열

(단위 : 원/월)

구 분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아	
	3회/주	5회/주	1회(기본료)	3회/주	1회(기본료)	3회/주	5회/주	1회(기본료)	
사 용 료	50,000	50,000	2,500	30,000	1,700	25,000	50,000	1,300	40,000
	(강습료)	(이용료)	(강습료)	(강습료)	(강습료)	(강습료)	(강습료)	(강습료)	(이용료)
기 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개		정				안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가. 문화강좌·생활체육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 분	사 용 료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 아			
문화강좌 프로그램	10,000~25,000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기	25,000~ 40,000	23,000~ 35,000	20,000~ 30,000			
	1회 기본료	1,800~ 2,300	1,200~ 2,000	1,000~ 1,500			
전산교육 프로그램	35,000~ 40,000	35,000	30,000				
유아·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30,000	25,000~ 150,000			
기 타	· 위 사용료는 월위 사용료로서 프로그램별 주 1회 내지 주5회 기준임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함						

나. 체육시설 사용료

(1) 수 열

(단위 : 원/월)

구 분	성 인		중·고생		초등생			유아			
	강습료	이용료	기본료	강습료	기본료	강습료	개인저도반	기본료	입마포함	유아단독	
사 용 료	50,000	70,000	50,000	2,500	30,000	1,700	25,000	40,000	100,000	1,300	40,000
									150,000		
기 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 성인 월강습회원은 비수기(당해년도10월~다음년도6월)기간중 자유수영 월 2회 무료사용 (단, 평일에 한함)										

현행					
(2)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6회/주	1회 (기본료)	6회/주	1회 (기본료)	
사용료	40,000	3,000	35,000	2,500	
기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3)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전일(주6회)		주간 (주6회) (09:00 ~17:00)	자유이용 (시간제)			비고
	성인	중·고 생	성인, 중· 고생	40분	60분	80분	
사용료	80,000	75,000	70,000	4,000	6,000	8,000	

3. 독서실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사용료	30,000원/월	500원/회	

개정안					
(2) 헬스					
(단위 : 원/월)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7회/주	1회 (기본료)	7회/주	1회 (기본료)	
사용료	40,000	3,000	35,000	2,5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유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타	· 위 강습료 및 이용료는 월단위 사용료임 · 기본료는 1회 입장료로 1일 2시간 기준임				

(3) 실내골프							
(단위 : 원/월)							
구분	전일(주 7회)			자유이용 (코인제)			비고
	성인	중·고 생	초등생/ 유아 (강습료 포함)	1 BOX	2 BOX	3 BOX	
사용료	80,000	75,000	80,000 0~10 0,000	4,000	6,000	8,000	휴관일은 이용하지 못하며, 공유일은 별도 운영시간에 한함
기타	· 초등생/유아 기본료는 1일 1~2시간 기준임						

비고 : 제2호의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하여 위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 또는 수탁자가 이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독서실

구분	성인	중·고생	비고
월 사용료	30,000원	15,000원	
일일 사용료	1,000원	500원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사 항
<p>마포개발공사 (마포문화체육센터)</p>	<p>○ 제12조 1항 관련별표 (4)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차량의 무료주차 - 당초 : 주차확인차량, 당일 차량에 한함 - 변경 : 주차확인차량에 한하여 3시간 무료, 10분경과시 마다 500원 추가징수</p> <p>○ 의 건 예식, 돌 및 회갑연 등의 행사 차량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할 경우 주차장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기존 정기회원들에게는 주차장 면적의 축소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무료 주차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함으로써 민원불편해소는 물론 효율적인 주차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p>	<p>○ 반 영 (4) 예식, 돌 및 회갑연 등 행사차량의 범위를 무한정으로 할 경우 기존 정기회원들과 주차면적 부족으로 또다른 민원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사차량의 무료주차시간을 3시간으로 제한하고 행사후 바로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민원불편 해소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출의견을 반영함</p>